

# 부산은행 - 채무인수 서류안내

※ 매도자, 매수인 같이 방문!!

· 상담전화 : 051-663-1514, 1515

· 상담가능시간 : 09:00 ~ 16:00

※ 토·일요일(휴일)은 전화상담이 불가능 합니다.

## 매도자

1. 신분증
2. 인감증명서(본인발급기준)(공동계약자도 필요)
3. 인감도장(공동계약자도 필요)
4. 주민등록등본
5. 전매수수료(10만원)

## 매수자

1. 분양계약서
  2. 매매계약서, 부동산실거래신고서 또는 증여계약서
  3. 신분증
  4. 인감증명서(본인발급기준)(공동계약자도 필요)
  5. 인감도장(공동계약자도 필요)
  6. 주민등록등본
  7. 초본(상세, 본인, 공동계약자, 전세대원)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계약자 본인 기준)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계약자, 공동계약자 각각)
  10. 인지대(5천만원 초과 35,000원, 1억 초과 75,000원)
  11. 소득서류
    - ① 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 증명원
    - ② 근로소득자인 경우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③ 연금소득자인 경우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또는 연금증서, 연금수급내역서(6개월)
    - ④ 기타소득자인 경우 : 아래 3가지 중 택 1
      - 신용카드사용내역서(연말정산용) + 사실증명원(필수)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6개월) + 사실증명원(필수)
      - 국민연금관리공단 발급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6개월) + 사실증명원(필수)
- ※ 소득신고사실 없음을 확인하는 "사실증명원"은 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함(기타소득자 필수)